

##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'미래·선도과제' 시행으로 미래유망 기술개발 지원

기술 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된 중소기업형 녹색성장 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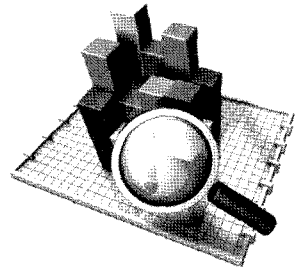
### 사업개요

-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"미래·선도과제"는
  -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형 4대 유망분야\*를 지원하는 단독형 사업
    - ※ 4대 유망분야 : ① 녹색성장, ② 신성장동력, ③ 신제조기반, ④ 고부가 틈새분야
- '10년 지원규모 : 874억원

### 지원분야

- 4대 유망분야의 기술제안 요청분야(RFP : Request for proposal)

↳ 2010년 4대 유망분야 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([www.smba.go.kr](http://www.smba.go.kr)) '지원사업' 또는 종합관리시스템([www.smtech.go.kr](http://www.smtech.go.kr)) '알림마당'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



## 신청자격

### ■ 기본 신청자격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
 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, 매출액 대비 R&D 투자비율이 3%이상인 기업
- 단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에서 아래의 업종은 제외
- 또한, 창업 1년 미만인 기업,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인 기업, 최근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 제외



### ■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- (서면 및 대면평가시)
  -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 (전문기관)
- (현장평가시)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(관리기관)
  - \*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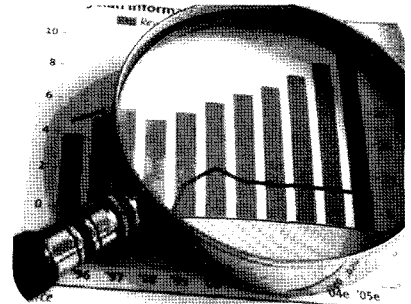
구분	확인 근거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 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</li> <li>•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</li> <li>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 부터 입력 상정</li> </ul>
상시종업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</li> </ul>
최근년도 매출액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</li> </ul>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</li> </ul>
R&D 투자비율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</li> </ul>
기술혁신형 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서</li> </ul>
벤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벤처기업 인증서</li> </ul>
기업부설연구소 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</li> </ul>

- \*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
- \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

**지원내용 및 한도**

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70%이내에서 최대 2년, 5억원까지 지원  
(개발기간 : 2년 이내, 년 2.5억원 이내)
- 민간부담금 :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0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에 한함)



**신청기간 및 방법**

- 신청기간 : 2010년 3월 2(화) ~ 3월 28일(일) 24 : 00까지

※ 마감일 24: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
 ※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3월 26일(금) 18:00까지

- 신청방법 : 온라인 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<http://www.smt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선택 후,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- 온라인 신청절차

신청절차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수행내용	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	접수확인 및 완료
사업계획서		[별지 제1-①] Part I	[별지 제1-①] Part II	

**과제평가 및 선정절차**

- 서면평가(4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,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

으로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■ 대면평가(4월~5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술성, 시장성 등을 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■ 현장평가(5월)

-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, 인프라(연구인력, 보유시설),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한 신청기업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 선정



■ 지원과제선정(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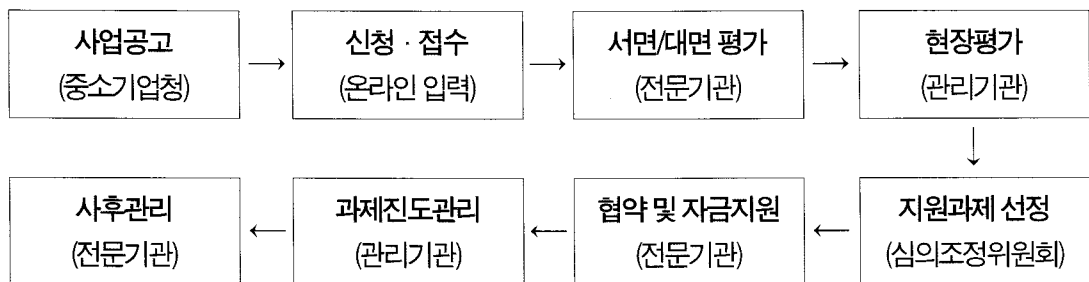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청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3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요청분야(RFP)별로 아래의 신규 종합평점에서 최고득점한 1개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·확정

신규 종합평점 = (대면평가 점수 0.6 + 현장평가 점수 0.4) + 우대배점 - 감점  
 ※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

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6월)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

〈 01년 미래·선도과제 추진절차도 〉



※ (관리기관) 지방중소기업청, (전문기관)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## 기술료 납부

-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"성공"으로 판정받을 경우, 총정부출연금의 20%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

※ 현금 일시납 원칙,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

##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
### ■ 신청제한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
- ※ 접수 마감일 기준, 단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

### ■ 평가·지원제외

※ 평가·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·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주관기관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

- 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-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 - 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- ③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-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  - ※ 단, 법정관리,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※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

○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(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)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

## 사업 문의

### ■ 사업총괄 및 전문기관

담당기관(담당부서)		전 화	문의사항
사업총괄	중소기업청(기술개발과)	042-481-4446/51	시행계획 및 추진일정
전문기관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중소기업평가팀)	042-715-2353/54 042-715-2356/57	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
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(중소기업 R&D 콜센터)	042-715-2353/54 042-715-2356/57	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